

● **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 - 331호**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12월 27일

금융위원회위원장

— 다 음 —

1. 상 호 : 유비에스은행 서울지점
2. 폐지대상 금융투자업
 - 가. 1-111-1 투자매매업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
 - 나. 1-32-1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
 - 다. 2-321-1 투자중개업 통화·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
3. 폐지 승인일 : 2017. 12. 20.
4. 이행사항 보고
 -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